##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60 발의연월일: 2024. 6. 28.

발 의 자: 송석준 · 김상훈 · 김선교

김종양 • 유상범 • 김성원

안철수 · 성일종 · 박성훈

박충권 • 엄태영 • 이종욱

김예지 · 김미애 의원

(14인)

#### 제안이유

현재 운영 중인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을 받으면, 혁신금융사업자는 해당 금융서비스를 지정기간 동안 테스트해 볼 수 있고,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 등에 부정적 영향이 없으면 해당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관련 법령정비가 추진됨.

그런데 금융관련 법령정비기간은 해당 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6개월로 제한되어 있어, 동 기간 중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않으면 혁신금융사업자가 사업을 중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선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존재함(ex: 알뜰폰, 댕겨용 서비스 등). 하지만 1년 6개월의 법령정비 기간은 법령 정비를 마치는 데 실제 소요되는 기간보디 현저히 짧아 다수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따라, 최대 2년 6개월까지 법령정비기간을 현실화하고, 금융위 원장이 단독으로 맡고 있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혁신금융 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금융위원장과 공동으로 맡 도록 하여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 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법령 정비 착수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기간을 현행 최대 1년 6개월에서 최대 2년 6개월로 연장(안 제10조의2제7항).
- 나. 민간 위원 중 호선된 자가 금융위원장과 공동으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되도록 하고, 위원장 권한대행 근거 신설(안 제13조제2항 및 안 제13조의2).

#### 법률 제 호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7항 본문 중 "6개월"을 "1년"으로, 같은 항 단서 중"6개월"을 "1년, 6개월"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1명"을 "2명"으로, "구성하며,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된다"를 "구성한다"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 ①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 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 1. 금융위원회 위원장
- 2. 제13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1명
- ② 위원장은 각자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 개선의 요청 등에 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금융관련법령 정비에 착수하여 진행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2(규제 개선의 요청 등)	제10조의2(규제 개선의 요청 등)
① ~ ⑥ (생 략)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6항에 따른 기간은 혁신금	⑦
융서비스 지정기간이 만료된 날	
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u>1년</u>
다만, 금융위원회 또는 관련 행	
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간 내에	
금융관련법령의 정비를 마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2회	
에 한정하여 각각 <u>6개월</u> 의 범위	1년, 6개월
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13조(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설	제13조(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설
치 및 구성 등) ① (생 략)	치 및 구성 등) ① (현행과 같
	<u>o</u> )
②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위원	②
장 <u>1명</u> 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u>2명</u>
위원으로 <u>구성하며, 혁신금융심</u>	<u>구성한다</u> .
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	
회 위원장이 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제13조의2(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 ①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 1. 금융위원회 위원장
- 2. 제13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1명
- ② 위원장은 각자 혁신금융심사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 무를 총괄한다.
- ③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 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 우에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 무를 대행한다.